

국가교육위원회
의 결

안 건 번 호 제2026-14호
안 건 명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(안)
의결연월일 2026. 5. 14.

주 문

「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(안)」에 대하여 <별지>와 같이 수정의결한다.

이 유

<별지>와 같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6년 5월 14일

위원장 차 정 인

상임위원 이 광 호

상임위원 김 경 희

위 원 김 건

위 원 김 영 도

위 원 김 용

위 원 박 영 환

위 원 반 상 진

위 원 손 덕 제

위 원 양 오 봉

위 원 연 취 현

위 원 유 민 봉

위 원 이 보 미

위 원 이 슬 기

위 원 이 현

위 원 장 신 호

위 원 전 은 영

위 원 최 은 옥

<별지>

「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(안)」 수정 의결 사항

□ 수정 의결

「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(안)」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아 래 -

1. 제21조제3항을 ‘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, 지역,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’로 수정한다.
2. 제23조제3항을 ‘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, 지역,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’로 수정한다.
3. 제26조제2항을 ‘제1항에 따른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’로 수정한다.
4. 「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」 상 ‘자(者)’를 ‘사람’으로 수정한다.

□ 수정 사유

국가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.